

기본소득 재원으로서 데이터세 도입방안

김 신 언*

■ 목 차 ■

I. 서론	7	IV. 데이터세 제도화 방안	38
II. 기본소득 재원으로 데이터세 도입의 필요성과 적합성	10	1. 기존 유사·관련 제도와 조화 방안	
1. 공공재(공유부)로서의 데이터와 초과수익		2. 징수방법	
2. 개인정보의 활용과 데이터주권		3. 배분방법	
3. 세원확보의 용이성		V. 결 론	55
III. 데이터세 도입에 따른 문제점	17		
1. 디지털 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			
2.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법적권리			
3. 데이터 가격 측정 문제			
4. 전가가능성 및 정보제공자의 편익분석			

* 세무사, 법학박사, 미국변호사(일리노이 주)

** 투고일 : 2020. 9. 10. 1차수정일 : 2020. 10. 27. 게재확정일 : 2020. 11. 11.

<국문초록>

현대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디지털화에 따라 세계 경제도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지만, 현대 사회는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화가 확산되면서 장차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인력을 대체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업종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경제 상황까지 악화되고 있다. 한편, 최근 정부가 코로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전 국민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절한 소득을 분배할 책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의 지급도 국가가 당연히 국민의 권익과 경제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치적인 논쟁의 이슈이기도 한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전 국민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 것이다. 국가는 공채와 조세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 공채는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국가의 부채가 증가하게 되므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적정선을 유지해야 한다. 반면, 조세는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므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되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의 재원확보와 관련된 문제가 바로 이러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4차산업 시대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사용에 대하여 국가의 채무증가나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는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방안이 마련된다면, 현재의 국면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한편, 세계 경제가 디지털화되면서 세계적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과 국내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등의 IT 기업들이 성장하였다. 특히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IT 기업들은 주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조세회피를 해오고 있는데,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디지털 세제의 도입에 세계 각국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IT 기업들은 그동안 개인이 만들어낸 원시데이터를 모은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로 가공 생산하여 수익사업에 활용한다. 이들은 그동안 무료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해 왔다는 점에서 개인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조세의 형태로 징수하여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른바 데이터세라고 하는 조세는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데이터의 사용대

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동안 세계적으로 논의된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수익을 과세하는 디지털세제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단위 기본소득 실행과 관련하여 실현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 데이터를 사용한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데이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 타당성과 법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데이터세의 취지와 유사한 각국의 제도를 분석하여 데이터세와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데이터세를 징수하는 방법과 배분방법을 제안하였다. 데이터세의 입법을 위해서는 먼저 국제조세 문제와 관련하여 디지털세제의 보완세로서의 역할과 데이터 사용에 대한 데이터 주권과 연계하여 그 과세논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데이터 가치(가격)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데, 우선적으로 국가가 가진 공공데이터를 데이터거래소를 통해 거래하고 민간이 가진 각종 데이터의 거래까지 활성화해야 한다.

▶ **주제어 :** 데이터세, 기본소득, 원시데이터, 디지털세제, 데이터거래소

I. 서 론

세계 경제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생산되는 빅데이터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사람들이 방문한 기록을 바탕으로 얼마나 자주 방문하고,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향후 판매 전략에 사용하기도 하고, 방문자의 취향에 맞는 광고를 개발하기도 한다. 정부도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동주택을 시공하기 전에 24시간 돌봄 수요를 예측¹⁾하

-
- 1) 현재 인구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혼부부 등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주거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추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유치원 등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노인 인구와 치매 환자의 증가에 따라 보다 적절히 의료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문 돌봄 서비스 또는 정부와 민간 요양병원의 수요를 예

거나, 의료 및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모니터링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 생활 전반에서 확보된 원시데이터(raw data)는 빅데이터 형태로 가공되거나 혹은 원시데이터 자체로도 거래가 이루어질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최근 금융데이터거래소²⁾ 운영기관인 금융보안원은 KDX 한국데이터 거래소³⁾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금융 및 유통 분야 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공급할 계획이다.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⁵⁾도 이러한 데이터 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한편, 최근 경기도는 한발 더 나아가 세계 최초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사람은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데이터배당(data dividends) 개념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주민이 지역화폐 카드를 사용하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비식별정보로 가공하여 민간기업 등에 되팔아 그 수익금의 일부를 사용실적이 있는 주민들에게 배당한 것이다.⁶⁾ 경기도의 기본 방침은 EU를 중심으로 IT 기업의 수익에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를 사용한 대가를 기여한 주민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⁷⁾ 즉, 4차 산업혁명 시

측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2) 금융보안원은 2020년 5월 11일 금융 분야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데이터거래 중개시스템을 출범하였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검색 및 분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매매할 수 있도록 계약에서 결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 3) 2019년 12월 2일 출범한 국내 최초 민간거래소이며, 유통소비 분야 데이터 플랫폼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경제, 산업, 보건의료, 통신, 부동산 등 유통소비 관련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 4)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원 — KDX 한국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유통 및 활용 혁신을 위한 MOU 체결”, 2020. 7. 22.자 보도자료.
- 5)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http://data.seoul.go.kr>), 경기데이터드림(<https://data.gg.go.kr>).
- 6) <https://www.etnews.com/20200220000337>(검색일 : 2020. 7. 27.).
- 7)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12281949001(검색일 : 2020. 7. 27.).

대의 도래로 데이터가 천연자원처럼 채굴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고, 데이터의 원천은 사회구성원의 간접적 기여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빅데이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 구글 등의 해외 IT 기업들과 네이버, 카카오 등의 국내 IT 기업들이 그 이익을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므로 그 수익의 원천을 적극적으로 과세하여 지역주민의 기본소득으로 환원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세란 개인이 창출한 원시데이터를 사용할 때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조세형태로 국가가 징수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성격의 기본소득제도가 일부 도입되면서 부동산 보유세의 1% 정도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자는 주장⁸⁾에 이어, 기본소득의 재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하나로 데이터세는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단위 기본소득 실행과 관련하여 실현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 데이터를 사용한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데이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 타당성과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데이터세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유사하거나 관련된 제도와 조화하는 방법과 징수 및 배분 문제에 대하여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8) 2020. 7. 8.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이재명 경기도 지사 발언 내용 발췌.

II. 기본소득 재원으로 데이터세 도입의 필요성과 적합성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다른 소득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소득을 균등하게 분배해주는 것을 뜻한다.⁹⁾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선별적 공공부조와 차이가 있으며, 노동 없이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무임승차 논란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가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해 공채를 발행할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고, 증세를 통해 실현하려 한다면 조세저항의 문제에 부딪힐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공유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¹⁰⁾이 주목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과연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과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한지와 데이터세가 세제로서 적합한지에 대하여 먼저 검토하기로 한다.

1. 공공재(공유부)로서의 데이터와 초과수익

디지털화는 온라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서로 손쉽게 연결하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가공하여 수익 사업에 이용하는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발생시키는 네트워크 효과¹¹⁾는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우버(Uber)는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빅데

9) Karl Widerquist and Allan Sheahan, *The Basic Income Guarantee in the United States : Past Experience, Current Proposals*, Georgetown University, 2012, p.2.

10) 금민, “공유자산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 『Future Horizon』 Vol.3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18~19면.

11) 네트워크 효과는 순기능도 있지만, 승자독식의 원리에 따라 자본에 의한 독점과 경쟁력의 차이에 의해 다른 자본을 몰락시키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터로 만들어 분석함으로써 언제 어디서 탑승자가 발생할지 예측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전 세계 4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링크드인(LinkedIn)은 지인들과 1촌을 맺게 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인맥을 찾아 주는 소셜 서비스 회사이다. 개인정보를 이용해 헤드헌팅 업체나 기업 인사 담당자를 연결하기도 한다. 페이스북(Facebook) 역시 개인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 확보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후 가입자들의 취향 등의 정보를 광고에 활용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 사업은 구글(Google) 같은 자본력 있는 거대 IT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고,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한 정보를 승자독식에 의한 방법으로 독점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반하여 그 원재료(raw data)를 공급하는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회사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수익을 그 공급자인 개인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 정보를 검색하고 클릭할 때 확보된 개인의 소규모 데이터(microdata)를 모아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분석하고 판매하는 것은 마치 원재료를 가공하여 필요한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과 비슷하지만, 단지 가공비만 부담하고 원재료비를 지불하지 않는 것과 같아서 기업의 초과수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의 인적자원에 해당하는 개인으로부터 확보한 원시데이터(raw data)를 정제과정(data refineries)을 거쳐 자신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빅데이터를 가공하는 IT 기업들에게 과세할 수 있는 데이터세 도입은 정당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개인의 인적정보는 국가가 제공하는 도로나 다리 같은 공공재(public goods)와 동일¹²⁾하며, 사람들이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형성된 공유부(common wealth)¹³⁾는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징수하여 데이터의 공급자에게 분

12) IZA Newsroom, “A data tax for a digital economy. The globalized internet age calls for innovative approaches to taxation”, 2018. 10. 23. <https://newsroom.iza.org/en/archive/opinion/a-data-tax-for-a-digital-economy>(검색일 : 2020. 7. 23.).

13) 공유부란 자연에서 주어지거나, 수많은 사람이 같이 만들어서 어떤 개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불공정한 것을 일컫는다. 공공기관에 의해 주민들이

배되어야 한다는 이유¹⁴⁾ 때문이다.

2. 개인정보의 활용과 데이터주권

유럽연합은 2016년 3월,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을 입법하여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GDPR은 자연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면서 정보 주체의 여러 가지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¹⁵⁾ 특히 삭제권(잊힐 권리 : Right of erasure or Right to be forgotten),¹⁶⁾ 데이터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¹⁷⁾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권리에 대한 선택권(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including profiling)¹⁸⁾ 등이 명문화되었다. 그밖에도 EU회원국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전 세계 모든 기업은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인정보가 EU 역외에 있는 IT 기업들에게 이전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를 현지화 정책(localization)이라고 하는데, 데이터의 현지화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공재(public goods)와는 그 기능면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14) 강남훈, “4차 산업혁명과 공유부 배당 — 새플리 가치의 관점에서 —”,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2018, 1면, 5면 ; 데이터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비임금 노동에 해당하는 자기활동을 통해 창출한 것으로서 빅데이터 회사들에게는 초과수익에 해당하므로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본다.

15) EU, *Regulation 2016/67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p.1[(1), (2)항].

16) EU, *Ibid.*, p.43(Article 17).

17) EU, *Ibid.*, p.45(Article 20). ; 데이터 이동권이란 정보주체가 이를 컨트롤하는 기업 등에게 자신이 제공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기계가 판독 가능한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컨트롤러는 이러한 요구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18) EU, *Ibid.*, p.46(Article 22).

보관 장소를 현지에 두기보다는 정보열람에 대한 통제에 초점을 맞추어 데이터의 국외반출을 규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구글 등의 다국적 IT 기업들로부터 데이터 유통시장을 탈환하기 위해 서버를 EU 내에 두도록 규정(역내 보관)하는 것은 곤란하므로¹⁹⁾ GDPR에서 정보이동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²⁰⁾ 만약, 기업들이 EU 시민에게서 수집한 정보를 허가²¹⁾ 없이 역외로 반출할 경우 세계 매출액의 최대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뿐만 아니라 구글 같은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로부터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데이터 활용에 있어 자기 결정권을 확대하려면 반드시 데이터 주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개인은 소비자이면서 데이터 가치를 창출하는 자로서 데이터 주권을 가진다. 소비자가 가진 데이터 주권(consumer data sovereignty)은 소비자 자신에 관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장, 유통 및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정보 주체인 개인이 가진 배타적 권리로써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의 흐름, 공개와 비공개, 사용 여부 등을 개인이 직접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²²⁾

19) 2015년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뉴질랜드, 호주, 페루, 칠레, 멕시코, 캐나다 및 미국 12개국이 세계 디지털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자유공정무역(free and fair trade)하에서 세계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을 맺었다. 이 협정에서 데이터 서버(Computing Facilities)를 현지에 두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Article 14.13 :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20) 우창완 · 김규리, “EU 정책분석 보고서”,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국경』,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7., 3~4면.

21) 해당 국가나 기업이 적절한 안전조치를 했다는 결정을 EU로부터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개인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이 있다면 사전에 고지해야만 하며, 개인 정보주체가 위험을 감수한다는 동의하에 이전이 가능하다(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20 이슈 리포트”, 『데이터 3법 개정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Vol.2, 2020. 4., 22면).

22) 윤수영,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소비자 데이터 주권에 대한 고찰 — EU GDPR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제29권 제5호, 한국소비자학회, 2018, 93면 ; 권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이른바 데이터 3법이라고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2020년 1월 개정하였다.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인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 콘텐츠 및 바이오 등 신산업의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육성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 개인의 소비패턴, 재무현황, 위험성향까지 분석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하고,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관리하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이 스스로 통합 관리할 수 있을 것²³⁾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GDPR의 영향을 받아 데이터의 주인인 개인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주권이 많이 향상되었다. 개인의 원시데이터는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또는 국가가 반드시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으로부터 동의 — 유상(거래) 또는 무상(증여)계약²⁴⁾ — 을 받아 수집하여야 한다.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시책을 마련할 의무²⁵⁾가 있으므로 공유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리 행사의 주체가 개인이고 객체가 개인정보보다는 세밀한 수준의 데이터라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차이가 있다.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정부는 효율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 간의 표준화 및 연계 운영 등의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권장하고 이를 구축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과 같은 법 제17조 제4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검토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 등을 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가명정보를 이용한 정보 간 결합을 통해 여전히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는 남아있다는 지적도 있다.

24) 최근 경기연구원이 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개인정보를 공익목적에 활용할 경우 정보제공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센티브(유상) 제공시 개인정보 제공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8.3%인데 현금보상(56%)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배영임·신혜리, “데이터3법, 데이터경제의 시작”, 『이슈&진단』 No.405, 경기연구원, 2020, 4면).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국민 개인의 데이터 주권 보호와 더불어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데이터요금을 대신 징수하여 분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EU는 개인정보의 EU 역외 반출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에도 아직 역외 IT 기업에게 동의를 받은 정보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EU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서비스세도 개인정보의 사용에 대한 수수료보다는 EU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IT 기업들이 개발한 빅데이터나 플랫폼의 사용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문제(BEPS)에 대한 대책일 뿐이다. 즉,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응하기 위해 수익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그 수익에 대한 과세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세(또는 디지털세)와, 데이터 주권 개념에서 발전한 데이터세는 그 취지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개인의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해서도 데이터세의 도입은 필요하다.

3. 세원확보의 용이성

데이터세가 어떠한 형태로 구현될지에 대하여 아직 예측할 수 없지만,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프랑스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같은 거대 IT 회사들에게 자국 내 매출액의 3%를 디지털서비스세로 부과할 경우 2019년 기준으로 1년간 최소한 2500만 유로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정하였다.²⁶⁾ 국내에서는 2019년 카카오톡, 쿠팡, 배달의 민족 등을 중심으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조 제2항 제4호.

26) <https://www.aa.com.tr/en/europe/france-to-impose-digital-tax-on-us-tech-corporations/1881704>(검색일 : 2020. 7. 23.). 스페인의 경우 18억 유로로 추산하고 있다. <https://www.euractiv.com/section/digital/news/spain-delays-collection-of-google-tax-amid-us-pressure/>(검색일 : 2020. 8. 25.).

로 하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2019년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전년대비 12.5% 성장한 26조 28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8년과 비교하여 14.7%가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약 43조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²⁷⁾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는 세계 빅데이터 시장이 2022년까지 26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리 정부도 공공 및 민간분야별 데이터 구축과 AI 활성화를 위해 2023년까지 국내 데이터 시장을 30조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한다는 전략을 발표하였다.²⁸⁾ IT 기업들의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면 데이터세의 대략적인 세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반면, 데이터의 사용량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더라도 세수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어, 전세계 인구가 1분마다 구글을 통해 200만 건을 검색하고 유튜브(YouTube)를 통해 1분마다 72시간의 비디오가 업로드 되고, 트위터에서 27만건의 트윗이 생성된다고 한다. 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매년 새로 생성되는 데이터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므로 거래되는 데이터의 용량을 과세표준으로 정한다면 매년 데이터세의 규모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기본소득이란 것이 개인에게 분배되는 균등한 금액을 의미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점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그 재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데이터의 사용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면, 지속적인 기본소득의 세원확보와 더불어 그 세수의 자연스런 증가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²⁹⁾ 이와 같이, 4차 산업시대의 자원인 데이터 사용에 대한 조세는 현시대에 보편적인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서 중요성과 더불어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정부는 데이터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27)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 2020. 3., 190면.

28) <https://www.ajunews.com/view/20190116095345172>(검색일 : 2020. 8. 2.).

29) 그러나 데이터 사용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데이터 자체의 가격을 산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 부분은 본문 제Ⅲ장 데이터 가치 측정 부분에서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있다. 다만, 아직 세계적으로 데이터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하에서는 데이터세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여러 가지 선결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Ⅲ. 데이터세 도입에 따른 문제점

1. 디지털 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

세계 경제가 디지털화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디지털 세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구글 등과 같은 세계적인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는 여전히 쉽지 않다. 현재까지 OECD와 G20, EU를 중심으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3%의 단일세율을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³⁰⁾와 고정사업장 등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개인 포함)에게 법인세(소득세)를 부과하는 디지털세가 있다. 전자는 유럽에서 논의가 가장 활발하며, OECD와 G20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많은 국가들은 후자의 방법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스페인을 중심으로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회사들이 뉴스 링크를 통해 얻은 광고수입 등에 대하여 저작권료를 강제하려는 스니펫세도 있다. 이하에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세제를 검토하여 데이터세의 차이점과 입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30)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단일세율을 부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같은 소비세 및 간접세에 해당한다.

가. 스니펫세(Snippet tax) 또는 구글세³¹⁾

‘스니펫(snippet)’이란 사전적으로 작은 정보(소식) 또는 대화, 음악 등의 한 토막을 뜻하는 단어이다.³²⁾ 구글 등과 같은 검색 엔진 회사들은 각종 언론사들로부터 확보한 뉴스를 제목을 포함한 링크와 함께 처음 몇 문장을 미리 보여 주고, 관심 있는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그 언론사의 웹사이트로 직접 접속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니펫세(snippet tax)³³⁾’는 이러한 뉴스 기사의 일부(snippet)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글 등과 같은 검색 엔진회사들이 언론사에게 뉴스의 사용료 내지 저작권료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링크세(link tax)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독일, 스페인을 중심으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디지털 저작권(digital copyright)에 대한 개혁으로 구글과 플랫폼회사에게 아주 적은 스니펫을 노출(display)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부과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해오고 있었다. 이후 2015년 12월 유럽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는 새로운 저작권법의 입법을 통해 온라인상의 스니펫에 구글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³⁴⁾하여, 2016년 9월 14일 ‘현대적인

31) 구글세는 스페인에서 처음 구글 등의 검색포털회사들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과징금(스니펫세)을 부과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시초가 되었지만, 이후 OECD를 중심으로 한 BEPS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세와 디지털서비스세를 가리킬 때도 혼용해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구글세는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의 조세회피 및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과되는 조세와 이들이 사용하는 뉴스 기사 등 콘텐츠에 대해 부과하는 사용료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결국 ‘스니펫세’는 이러한 ‘구글세’의 일부[김현경, “구글(Google)의 뉴스 저작물 정책에 대한 고찰”, 『강원법학』 제49권,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2016, 886면]로 보기도 한다.

32) 옥스퍼드 영한사전.

33) 유럽에서 snippet tax를 link tax 또는 Google news tax 등으로 사용하며, 국내에서도 뉴스사용료, 저작권료라고도 쓰이기도 한다.

34) Glyn moody, *New EU copyright rules would give travelers cross-border Netflix access*, Arstechnica, 9 Dec 2015.

<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15/12/eus-new-copyright-framework-could-introduce-google-tax-on-snippets/>(검색일 : 2020. 8. 26.).

유럽 저작권법 개정안(Moderne Urheberrechtsvorschriften für die EU)’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뉴스 기사에 대하여 언론사(publisher)가 대가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인정하였는데, 유럽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사가 자신의 성과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하든지 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³⁵⁾ 검색엔진 회사들은 뉴스저작물의 이용 방식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의 대가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스니펫세는 소량의 정보(snippet)라도 할지라도 저작물의 핵심적인 부분 이라면 공정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³⁶⁾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스페인인 2014년 스니펫세(일명 구글세)를 처음 입법하였는데, 과세당국이 구글 등의 검색엔진회사들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의 저작권을 인정한 것이었고, 다만 구글 등의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최대 60만유로(758,000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³⁷⁾ 따라서 스니펫세는 엄밀히 말해서 조세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입법 당시 스페인의 언론사 광고수입은 2007년 20억 유로 대비 2013년에는 7억 유로로 떨어져서 디지털화로 인해 신문발행보다 광고 수입에 의존하던 스페인 언론출판 업계의 의회 로비가 활발했다고 전해진다.³⁸⁾ 하지만 스페인 정부도 스네닛 세로 인해 구글이 스페인에서 뉴스검색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다. 구글은 구글뉴스에서 직접적인 수익창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낼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스페인에서 시작된 저작권료의 여파가 유럽 다른 나라에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

35) 윤장렬, “기사 제공을 둘러싼 구글과 언론사의 공방전 — 유럽 저작권법 개정 배경과 논의”, 『언론중재』 통권 제141호, 언론중재위원회, 2016, 101면.

36) 김현경,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공평규제를 위한 제언”, 『성균관법학』 제29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84면.

37) New study shows Spain’s “Google tax” has been a disaster for publishers, <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15/07/new-study-shows-spains-google-tax-has-been-a-disaster-for-publishers/>(검색일 : 2020. 8. 27.).

38) “‘구글세’ 견으려던 스페인 언론, 백기투항”, <http://www.bloter.net/archives/215621> (검색일 : 2020. 8. 27.).

은 짐작할 수 있다.³⁹⁾ 사실 저작권법은 디지털 경제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신문사의 수익을 증대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이용자의 수가 감소한다면 더 손해를 본다는 지적은 도입당시부터 제기된 것이었다.⁴⁰⁾ 따라서 스니펫세를 도입할 때 자국 내에 강력한 검색엔진 회사를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위협이 광고업계 또는 자국민의 경제생활에 미칠 손해에 대해서도 고민해야만 한다. 또한 IT 회사들이 개인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이라고 주장할 경우 데이터 사용에 대한 법적 권리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나. EU의 디지털서비스세와 미국과의 통상마찰

2015년 OECD와 G20회원국을 중심으로 다국적 IT 기업들의 이른바 세원

39) Google is threatening to kill Google News in Europe if the EU goes ahead with its “snippet tax”, <https://www.niemanlab.org/2019/01/google-is-threatening-to-kill-google-news-in-europe-if-the-eu-goes-ahead-with-its-snippet-tax/>(검색일 : 2020. 9. 12.).

40) 그러나 여전히 독일의 Axel Springer社나 영국의 NewsCorp와 같은 언론사들은 스니펫세가 언론사의 수익을 증대시킬 유일한 길이라면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유럽뿐만 아니라 2017년 7월에는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2,000여개 언론사를 대표하는 News Media Alliance는 미국 의회에 공동으로 구글과 페이스북과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독일과 스페인에서 이미 홍역을 치루었음에도 최근 EU에서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 사업자들에게 언론사의 뉴스 기사를 이용할 때 사용료를 부과하는 스니펫세를 강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구글은 만약 스니펫세를 강제로 부과할 경우 유럽 전역에서 뉴스검색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

<https://www.zdnet.com/article/the-google-news-effect-spain-reveals-the-winners-and-losers-from-a-link-tax/>

<https://www.itpro.com/strategy/29138/the-eu-takes-on-google-with-new-copyright-reform>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17/jul/10/news-media-alliance-targets-facebook-and-google-in-fight-against-fake-news>

<https://www.niemanlab.org/2019/01/google-is-threatening-to-kill-google-news-in-europe-if-the-eu-goes-ahead-with-its-snippet-tax/>(검색일 : 2020. 8. 26.).

잠식과 소득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막기 위해 15개에 달하는 BEPS 프로젝트(Action1~Action 15)를 채택한 이후 Action 1의 후속 작업으로 2018년에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에 따르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2020년 말 이후 예정된 국제적인 포괄이행체제 이전이라도 개별 국가가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다.⁴¹⁾ EU 경제이사회가 가장 빨리 반응하였는데, 다국적 IT 기업이 EU 내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단일세율을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의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특히, 프랑스가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2019년 7월 상원을 통과한 법률에 따라 2019년에 발생한 분부터 소급해서 매출액에 3%의 세율로 디지털서비스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미국과의 통상마찰로 인해 디지털세에 관한 BEPS 다자간 협의체의 합의가 나오는 시기⁴²⁾까지 과세를 연기한 상태이다.⁴³⁾ 이탈리아도 시행시기를 연기하였지만, 프랑스처럼 매출액에 3%의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고, 영국도 2%의 서비스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통상마찰 및 자국 내 다국적 IT 기업의 철수에 따른 경제 충격 등을 우려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입법하려는 EU 회원국은 많지 않다.⁴⁴⁾

디지털서비스세 도입과 관련한 미국과의 통상마찰은 2019. 12. 2. 미국 무역대표부가 프랑스 디지털서비스세가 美통상법 제301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더욱 심해졌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세는 OECD모델 조세조약이나 UN모델조약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기업의 소득에만 과세

41)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Interim Report 2018*(이하 ‘Interim report 2018’), p.15(9항), p.20(27, 29항), p.173(399항), p.180(412항).

42)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말까지 예정된 디지털세 최종방안 합의시점이 2021년 중반으로 공식적으로 연장되었다(기획재정부, “OECD/G20 IF, 디지털세 논의 경과보고서 공개”, 2020. 10. 12.자 보도자료).

43) 프랑스는 미국의 IT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서비스세 과세를, 미국은 프랑스 제품에 대한 100% 관세부과를 각각 유예하기로 하였다.

44) 기획재정부, “디지털세 국제 논의 최근 동향”, 2019. 10. 30.자 보도참고자료, 9면.

(income-type taxation)한다는 국제조세 기본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았다.⁴⁵⁾ OECD모델 조세조약뿐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양자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서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익(the profits that are attributable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기업이 창출한 수익을 의미할 뿐 고객이 소비한 기준(기업 입장에서 매출액을 의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⁴⁶⁾ 따라서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이외에 제3의 세금이 되며, 국제적 이중과세가 된다고 주장하였다.⁴⁷⁾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세가 대부분 미국의 IT 기업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과 같은 회사만을 표적으로 했다는 점도 부당하게 국제통상에서 국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았다.⁴⁸⁾ 따라서 美통상법(US Trade Act) 제 301조[19 U.S.C. § 2411(a)–(b)]에 근거하여 프랑스를 WTO에 제소하거나 프랑스 수출품에 대한 관세 및 수수료 부과, 또는 수입제한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⁴⁹⁾ 이후 프랑스와 미국은 BEPS 다자간협의체가 합의기반 장기적 해결책(consensus-based long term solution)을 개발하기로 되어 있으므로⁵⁰⁾ 일단 디지털서비스세와 관세부과를 각각 유예하였다.⁵¹⁾

45) US Trade Representative, *Section 301 Investigation Report on France's Digital Services Tax*, December 2, 2019, p.60.

46) US Trade Representative, *Ibid.*, p.62.

47) US Trade Representative, *Ibid.*, p.66.

48) US Trade Representative, *Ibid.*, p.67.

49) US Trade Representative, *Ibid.*, pp.76~77.

50) OECD, *Statement by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on the Two-Pillar Approach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29–30 January, 2020(이하 'IF on BEPS Two-pillar Approach'), p.5(6항).

51) 그러나 2020년 6월 미국 재무장관이 디지털서비스세를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의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 극복에 집중하기 위해 OECD 내 디지털서비스세에 대한 논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자,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 Le Maire는 예정대로 2020년 말 디지털서비스세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미국 역시 2020년 7월 10일 프랑스가 디지털서비스세를 강행할 경우 프랑스 와인, 명품 등에 대하여 25%의 관세(약 13억 달러)를 부

디지털서비스세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와는 별도로 과세하므로 이를 도입할 경우 충분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⁵²⁾이 있지만, 법리적으로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디지털서비스세⁵³⁾는 수익에 대한 과세를 표방하는 디지털세의 과세원칙과 충돌한다.⁵⁴⁾ 즉, OECD가 2018년 중간보고서에서 요구한 것과 같이 BEPS의 임시조치⁵⁵⁾(interim measure)인 디지털서비스세는 기존 조세체계와의 충돌을 최소화해야 하는 전제조건⁵⁶⁾에도 배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다. BEPS 다자간협약체의 디지털(소득)세

디지털 경제에서는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수익의 실현이 가능하고, 주로 콘텐츠나 서비스와 같은 무형자산을 이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글 등과 같은 세계적인 IT 기업이 창출한 이익에 대하여 시장소재지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OECD와 G20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이들이 창출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국가 간 과세권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디지털세는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세계 137개국이 참여하는 BEPS 다자간협약체(Inclusive Framework)는 2019년 10월 디지털 사업모델에서 발생한 가치 배분을 위한 통합접근법(또는 단일접근법 Unified Approach)을 확

과하겠다고 맞대응했다. ; <https://www.fnnews.com/news/202007120432415274>(검색일 : 2020. 7. 23.).

52)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제27권 22호, 2018. 11., 18면.

53) 매출액에 일정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법인세보다는 부가가치세(소비세)로 볼 수 있다.

54) 기획재정부, 앞의 보도참고자료[각주 44)], 9면.

55) 여기서 OECD가 말한 임시적 조치란 EU 일부 국가가 입법한 디지털서비스세만을 의미하지 않고 디지털세(법인소득에 과세)까지 포함한 것이다.

56) OECD, Interim Report 2018, p.184(435항).

정하였다. 이 방법은 다국적 기업과 소비지 국가와의 연계성(nexus) 및 이익 배분(profit allocation)을 규정하여 그동안 물리적 실재(고정사업장)가 없어서 과세할 수 없던 IT 기업들을 시장소재지 국가가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업이 자동화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할 경우⁵⁷⁾ 기업의 잔여이익을 배분한다는 원칙은 정확한 산출근거(즉, 시장이 위치한 국가에서 다국적 IT 기업의 영리활동에 대한 데이터 등)를 제시할 수 있다면 그 징수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세는 구글 같은 해외 IT 기업뿐만 아니라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만약 다국적 IT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거나(아직 협의 중이긴 하지만) 통상이익률이 낮아 분배되지 않는다면,⁵⁸⁾ 시장소재지 국가가 징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기본소득의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여 판매하는 IT 기업에 대하여 소득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 즉, 데이터세는 기업의 결손 여부와 상관없이 데이터를 사용한 대가를 징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디지털세와 같은 형태가 될 수 없다.

라.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도 학계와 국회를 중심으로 디지털 세제와 관련한 논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수많은 연구보고서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먼저 저작권과 관련된 스피릿세의 경우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 이유로 우리나라는 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국내기업들이 구글 같은 해외기업들보다 검색포털 시장에서 우위를 잡

57) OECD, IF on BEPS Two-pillar Approach, p.11(24, 28항). ; 귀중품, 화장품, 의복 및 브랜드 식료품(branded foods and refreshments)과 자동차까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와 같은 IT 기업들 외에도 LVMH와 같이 럭셔리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과 테슬라와 같은 자동차 회사들까지 포함된다.

58) 기획재정부, 앞의 보도참고자료[각주 44)], 4면.

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내 저작권법상 검색뉴스에 대하여 포털 기사를 외부로 링크하는 방식이 저작권⁵⁹⁾의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단순링크나 직접링크의 경우 저작권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내의 일반적인 견해이다.⁶⁰⁾ 링크된 해당 웹페이지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글의 뉴스저작물이 외부로 직접 링크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⁶¹⁾도 인터넷 링크는 웹의 위치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이용자가 클릭하여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⁶²⁾ 그러므로 구글 뿐만 아니라 국내 네이버 등의 검색엔진 회사들에게 유럽의 스피릿세의 도입에 앞서 링크와 관련된 국내 저작권법상의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우리 정부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이 실시하려고 하는 디지털서비스세의 도입에 부정적이다. 그 이유로 디지털서비스세를 법인에 대한 과세로 규정한다면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디지털서비스세와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법률체계가 배치되기 때문이다. 만약 법인세가 아닌 소비세로 과세하더라도 소비세의 특성상 소비자에게 전가가 쉬우므로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과 부가가치세와 중복과세 된다는 점을 문제로 들고 있다.⁶³⁾ 카카오 등 매출 규모가 큰 국내 IT 회사가 증가하는 추

59)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제16조 복제권, 제17조 공연권, 제18조 공중송신권, 제19조 전시권, 제20조 배포권, 제21조 대여권, 제22조 2차적 저작물작성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60) 홍승희, “인터넷링크행위와 저작권 침해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 13748판결 —”, 『형사판례연구』 제24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6, 595면.

61)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62) 또한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저작물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또는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그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63) 기획재정부, 앞의 보도참고자료[각주 44)], 9면.

세이고, 세계시장에서 국내기업의 시장점유율도 높아지고 있어서 국내기업에게 유리하지만도 않고, 미국과 통상마찰이나 조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⁶⁴⁾는 점도 단점이다. 한편에서는 EU의 디지털서비스세는 협의과세의 일종이므로,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⁶⁵⁾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는 대체로 법적형태로 디지털서비스세 보다는 디지털세가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디지털세의 경우 최근 전통적인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다국적 IT 기업이 소득을 발생시키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는 방법(통합접근법 중 금액 A)이 고안되었고, 추가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다국적 기업의 전세계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합의안이 나올 예정이어서 그 추이를 보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마. 데이터세와의 차이점(과세요건을 중심으로)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과세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법률에서 반드시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과세요건이란, 과세물건이라고도 하는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데이터세의 과세대상은 개인이 창출한 원시데이터의 사용가치이므로 본질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디지털서비스세나 디지털세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즉, 데이터세는 국내외 IT 기업들이 개인의 원시데이터를 사용함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IT 기업이 창출한 이익에 과세하고자 하는 디지털세나 디지털서비스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반면, 스니펫세가 검색엔진회사들의 수익창출에 영향을 미친 뉴스기사의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데이터세와 같이 수익을 창

64) 김은경, “디지털세의 현황 및 쟁점”, 『이슈&진단』 제387호, 경기연구원, 2019. 9. 25., 3면.

65) 고창열 외 2인,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다국적 인터넷기업 과세 방안”, 『전문경영인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전문경영인학회, 2019, 238~239면.

출하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원가개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에 대한 과세가 스니펫세라면, 프라이버시권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과세를 데이터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니펫세의 경우 적은 양의 기사라도 언론사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주요목적이며, 그 권리행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엄밀히 말해서 조세로 볼 수는 없다. 즉, 스니펫세의 성질은 과징금이므로 일반적인 조세가 추구하는 과세요건 중에서 과세표준을 구체적으로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가 언론사와 같은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그 협상에 나서는 것도 아니고, 구글 등의 회사에 과세한 후 저작권자에게 배분하는 것도 아니므로 데이터세의 목적과도 차이가 있다. 반면, 데이터세도 조세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가 개인의 데이터 사용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 여부에 대한 문제도 풀어야 한다. 프라이버시권에 대하여 개인이 정보이용 동의를 할 경우 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재산권)까지도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 데이터세와 차이점 비교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스니펫세	검색엔진회사	뉴스	*	*
디지털서비스세	다국적IP기업	이익	매출액	2~3%
디지털세	IP기업, 명품, 화장품, 자동차회사	이익	소득 (매출액 - 비용등)	각국의 법인세율
데이터세	빅데이터 가공회사	데이터사용	데이터 가치	0~100%

디지털서비스세,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은 모두 해당 법인이 시장소재지 국가에서 창출한 수익이지만, 디지털서비스세의 과세표준은 매출액이며 디지털세의 과세표준은 매출액에서 비용 등을 제외한 소득이다. 결국, 디지털서비스세는 시장소재지 국가에서 발생한 수익을 과세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으로써 비논리적이며, 그 형태도 기형적이다. 데이터세가 만약 과세표준을 디

지털서비스세와 같이 IT 기업의 매출액으로 한다면 비록 과세대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디지털서비스세가 가진 것과 동일한 문제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편, 비록 이익 창출에 기여했다라도 데이터세가 디지털세와 같이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도 없다.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원시데이터가 소득의 창출에 미친 영향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이 무척 힘들기 때문이다.

소비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세 형태의 디지털서비스세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과세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부가가치세 이외에 중복해서 과세될 수 있다. 원시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은 이를 가공하는 IT 기업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소모한다고 표현할 수 없고, 개인이 아니라 IT 기업이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하는 까닭에 데이터세는 개인의 소비세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데이터세는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이 아닌 IT 기업이 소비자로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되므로 IT 기업은 소비자가 될 수는 있지만,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게 된다. EU의 소비세인 디지털서비스세는 소비의 주체가 개인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이 그 징수의무를 지는 간접세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소비세는 IT 기업 자체가 원시데이터를 소모(활용)하고 그 대가를 직접 국가를 통해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그 담세자에서 디지털서비스와의 차이가 있다. 반면, 디지털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익을 창출한 IT 기업이며, 데이터세도 원시데이터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IT 기업이 된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가 동일하다.

2.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법적권리

가. 저작권 등 개인의 소유권

앞서 살펴본 스니펫세의 경우 적은 양의 정보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하느냐에 대한 견해 대립이 심하였는데, 스니펫세가 유럽에서 도입될 때 유럽은 저작권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EU는 2019년 3월 26일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a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을 유럽연합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지침은 상업적 규모의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 통신, 빅데이터 등에 대하여 유럽연합이 단일시장전략을 수립한 이후 2016년 초안에 대한 비판 의견 등을 수렴해서 그 보호 대상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지침 제15조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던 저자권자 등의 권리자에게 hyper linking되거나 적은 양의 기사라고 하더라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저작물 등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⁶⁶⁾ 이 지침은 독일과 스페인에서 이미 저작권과 관련하여 먼저 입법되었던 부수적 권리(ancillary right)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종전의 저작권법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영역을 배타적인 권리로서 인정하여 뉴스기사의 작은 일부분을 제공하는 검색포털 등의 회사에게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는 점⁶⁷⁾에서 의의가 있다.

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순링크나 직접링

66) EU, *Directive 2019/790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2019, Article 15, 제2항·제5항.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9L0790>(검색일 : 2020. 9. 16.).

67) 박민주 외 2인, “유럽연합 DSM 저작권지침상 간행물 발행자의 보호”, 『경영법학』 제29권 제4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9, 244면.

크는 저작권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국내 언론사들이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신문 또는 방송뉴스 기사를 사용할 때 수수료를 책정하여 상품형태로 판매하고 있고,⁶⁸⁾ 검색포털의 뉴스 저작권료를 CP계약을 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뉴스 전재료⁶⁹⁾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다가 현재는 광고수익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진다.⁷⁰⁾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콘텐츠가 개인 또는 언론사의 수고에 의해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그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 데이터 3법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산적 가치

한편, 데이터를 사용한 대가를 이를 가공하는 IT 기업들로부터 청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원시데이터에 대하여 각 개인이 프라이버시권 보호목적 이외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인정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이 간접적으로 제공한 데이터에 대하여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 자신이 그 데이터에 대한 재산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개인정보 이외에 가명정보⁷¹⁾와 익명정보⁷²⁾라

68)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s://www.kpf.or.kr/front/intropage/intropageShow.do?page_id=693e328b0a74492bb666302259e8c2e8(검색일 : 2020. 9. 14.).

69) 전재료는 검색포털회사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언론사의 뉴스콘텐츠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70)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917674.html>(검색일 : 2020. 9. 14.).

71)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정보주체를 알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한 것을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72)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한 정보는 익명정보라고 하는데, 더 이상 개인정보로서의 기능을 가지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직간접적으로 개인의 핵심 정보를 통해 자

는 것이 도입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의 활용 및 확대를 위한 새로운 산업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가명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나 공익목적의 기록보존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⁷³⁾ 이러한 가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용이하지만, 개인정보보다는 활용에 초점을 둔 기업들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여전히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⁷⁴⁾ 금융 및 정보화 산업연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개인정보보호가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⁷⁵⁾ 특히, 개정된 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그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라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수집 및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⁷⁶⁾

따라서 데이터 3법의 개정은 오히려 개인이 발생시키고 거기에서 다시 파생된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문제만 부각되었을 뿐 재산권으로서 가치는 조명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를 공공재의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고려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

산관리, 대출이나 보험중개업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금융서비스 사업뿐만 아니라 건강, 의료, 및 유통업까지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7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32조 제9호의2, 제9호의4 ; 이 기록들이 바로 빅데이터가 된다.

74) 따라서 신용정보법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목적 기록보존에 대하여 개인에게 그 이용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안정성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처벌 규정의 강화 등 보완책을 갖추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호의4 라목,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45조(감독·검사 등).

75) 이양복, “데이터 3법의 분석과 향후과제”, 『비교사법』 제27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 425면, 430면, 436면 ; 우리나라의 데이터 3법 개정이 유럽의 GDPR을 근간으로 하였지만, 유럽에 비해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76)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4항.

한 재산적 권리 중에서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는 개인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공공재로서 그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정부가 공공재의 이용 대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데이터 3법의 개정 이유가 빅 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도입되는 데이터세는 관련 산업의 해외 경쟁력 확보와 연관 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범위이어야 한다.

3. 데이터 가격 측정 문제

가. 과세표준의 결정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등 거대 IT 기업에 대한 과세를 준비하면서 디지털서비스세뿐만 아니라 디지털세(법인세)도 함께 검토하였다. 그런데 2018년 OECD 중간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디지털 거래에서 창출된 소득을 시장소재지 국가에 배분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적 일관성과 간결성을 입법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디지털세는 배제되었다.⁷⁷⁾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편이 소득을 계산한 후 다시 시장소재지 기여분에 맞게 분배하는 것보다 간편하고, 일정한 금액의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데이터세의 도입 취지가 데이터를 제공한 개인에 대한 대가(비용)라면, 디지털서비스세처럼 단순히 기업의 매출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마찬가지로 디지털세처럼 소득(매출액에서 모든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개인이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가치는 데이터를 모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기업에게는 그 원재료(raw data)의 구입 대가에 해당하므로 IT 기업의 향후 매출이나 수익과 연동시키기 곤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⁸⁾ 따라서 데이

77)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impact assessment*, 2018, p.57, p.78.

78) 예를 들어, 강남의 프랜차이즈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매출대비 수익률을 정리해

터세의 과세표준은 데이터가 거래되는 가격으로 해야 하고, 그 금액이 바로 원시데이터를 생산한 개인에게 징수를 통해 배분될 금액의 합계가 된다.

데이터를 이용하는 IT 기업이 데이터 가공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것처럼 개인이 창출한 원시데이터(raw data)를 사용하는 IT 기업도 자신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그 제공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매우 합리적이다. 데이터세의 과세표준은 IT 기업들이 시장소재지 국가 내에서 창출한 수익이 아니라 데이터를 사용한 대가인 까닭⁷⁹⁾에 국제조세의 기본개념인 고정사업장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미국이 프랑스에 대한 통상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때 언급한 것처럼 데이터세가 만약 ‘제3의 세금’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복과세로 보기 힘들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이 가치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객관적 기준을 먼저 마련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가치의 측정과 과세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나. 측정 방법

데이터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표준, 즉 원시데이터의 가격 측정 방법은 반드시 간결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EU가 법리적, 논리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세가 아닌 디지털서비스세를 채택한 이유가 디지털세는 법적 간결성과 일관성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터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서 1,800만원에 각각 판매하는 IT 기업의 경우 이 정보를 구입하는 고객이 10명이면 1억8천만원, 100명이면 18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매출과는 상관없이 프랜차이즈 점포가 매출액과 비용 등의 정보를 제공한 대가는 IT 기업이 고객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지불되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IT 기업의 역량에 달려있으며, 그에 따른 순이익이 원가(raw data)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79) 데이터세가 다국적 IT 기업은 자신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원재료의 구입을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데이터세의 과세표준은 원시데이터의 가격이 되어야 타당하다.

서 원시데이터의 가격책정 방법이 보편적이고 합리적이어야만 한다. 금융위원회도 조만간 데이터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할 방침⁸⁰⁾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한편, 금융데이터거래소를 운영하는 금융보안원은 최근 데이터 가치를 측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유사한 데이터 자산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 그 가격을 기준으로 가치를 측정하는 시장접근법, 둘째, 데이터 생산과 대체에 필요한 인건비, 제조경비 등을 활용하는 비용접근법, 마지막으로 데이터 활용으로 얻는 이익과 비용이 예상되는 현금흐름 가치를 통해 판단하는 수익관점법이다.^{81), 82)}

먼저 시장접근법에 데이터 가격을 측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데이터거래소에서 거래를 통해 구축된 빅데이터의 가치가 공정가치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보편적인 원시데이터의 가격산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금융보안원이 데이터거래소가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⁸³⁾도 데이터 시장을 통해 시장가치를 형성할 수 있어 거래가

80) 금융위원회, “‘안전한 데이터 유통’ 금융분야가 선도하겠습니다.”, 2020. 1. 21.자 보도자료, 6면 ; 금융위원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 2020. 5. 11.자 보도자료, 4면.

81) 이전가격세제에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과 개념적으로 비슷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이 든다. 전통적인 정상가격 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이었다. 이후 거래이익방법(이익분할방법 및 거래순이익율법,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방법으로 다시 나뉜다.)을 추가하여 이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전가격과세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만 적용된다.

82) <https://zdnet.co.kr/view/?no=20200512124640>(검색일 : 2020. 7. 27.) ; 만약, 자동차에 설치된 운전습관 기록 장치를 판매하는 A회사가 손해보험회사로부터 1년간 2만 명의 운전자 행동 패턴 데이터를 구매한다고 할 경우 시장접근법으로는 약 98억원, 비용접근법으로는 약 82억원, 수익관점법으로는 약 129억원이 되며, 데이터를 제공한 개인에게는 1인당 접근방법에 따라 41만원에서 64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보다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IT 기업이 원시데이터를 데이터거래소를 통해 구입한 것이 아니거나 거래가 되지 않는 데이터라면, 정부가 직접 데이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이때 데이터 생산과 대체에 필요한 인건비 등의 모든 원가를 토대로 원시데이터의 가격을 추정하는 비용접근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접근법은 IT 기업마다 다른 수익구조를 가질 수 있고, 제3자와 비교대상을 찾기 어려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데이터세 징수를 위한 원시데이터가 IT 기업의 매출액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수익과 비용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수익관점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데이터세가 IT 기업들이 원시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인해 창출한 수익에 대한 원재료의 구입비용으로 본다면, 이를 서로 연관시킬 수 있어야 한다. IT 기업의 제조비용(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등을 제외)은 장차 부과될 데이터세의 대상이 되는 원시데이터의 구입비용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빅데이터 가공비용 등으로 구성될 것이다. 여기서 원재료(raw data)의 단가를 가공비용의 단가에 비하여 어떻게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⁸⁴⁾ 가공비용은 실제 투입된 가격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여태 무상으로 취득한 원재료의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만약 IT 기업들이 이 원가를 산출해 내더라도 내부 자료에 해당하므로 국내 기업은 제외하고라도 국외기업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할

83) 금융보안원, 앞의 보도참고자료[각주 4].

84) 제조업을 예로 들면,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 매매가격이 결정되기 전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등의 일체 비용과 이윤을 고려한다. 빅데이터를 가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IT 기업들도 원시데이터를 확보한 후 빅데이터화 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공한 정보를 직접 팔거나 다른 광고 등에 이용한다. 그러나 빅데이터는 기존의 방법이나 수단으로 이를 수집, 저장, 분석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Volume)을 특징으로 한다. 빅데이터의 양은 최소한 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로 구성되는 데 이를 구성하는 원시데이터를 제공한 사람의 숫자에 맞게 소득을 분배하여 비용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추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 있는지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수익관점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세와 같이 순소득을 데이터세가 과세표준으로 삼기 곤란하다는 점 때문에 다른 객관적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수단으로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전가가능성 및 정보제공자의 편익분석

IT 기업이 원시데이터의 가격을 부담하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상품의 가격이 동반 상승함으로써 최종소비자인 개인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데이터세가 소비세가 아닌 소득세라도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나타나는 양면시장을 고려하면, 거대 IT 기업들은 네트워크 효과를 내기 위해 소비자에게 무료 사용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많이 확보한다. 그 후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면, 경쟁 과정에서 줄어든 수익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디지털 상품의 판매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원시데이터의 제공자인 개인도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고객이 될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시데이터의 제공으로 수수료(편익)를 받은 다음 빅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은 편익에 비해 비용이 많아 손해이다. 정부도 아주 복잡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IT 기업으로부터 원시데이터 이용수수료(데이터세) 징수한 후 상당한 행정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여 다시 배분(공평은 별도의 문제임)하는 것이므로 비효율적이고 실익도 없다. 뿐만 아니라 IT 기업(플랫폼)들은 정보제공자에게 전가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향후 소비자로서 부담할 정보이용료를 광고회사 등에게 전가할 수 있다.⁸⁵⁾ 소규모 IT 기업입장에서는 거대 IT 기업

85) 예를 들어, 유튜브는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일정시간 광고를 시청하는 조건으로 시청자가 무상으로 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데, 상호교환(영상공급 — 광고 시청) 가치를 인정하는 계약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유튜브는 이렇게 확보한 시청자의 성향이나 접속 횟수, 선호 등의 원시데이터를 분석하여 효과적이고 고객

을 상대로 경쟁해야 하는 부담과 더불어 원시데이터 사용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승자독식의 네트워크 효과가 빠르게 전개될 것이며 소비자의 효용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데이터세가 IT 기업이 아닌 광고주 또는 사용자(정보제공자)에게 전가된다면, 데이터세의 효과는 반감된다. 따라서 원시데이터의 가격이 시장가격을 교란시키지 않은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공정가치를 형성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전가하지 못할 대안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적으로 시장효과에 의해 데이터세의 도입에 따른 편익이 사용자 등에게 전가되는 비용보다 우월한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세의 도입 초기에는 거대 IT 기업을 중심으로 사용자 등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IT 기업들도 보다 양질의 원시데이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고 보다 빠르게 가공할 수 있게 되어 순이익이 증가한다면, 데이터 시장에서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구입할 것이다. 시장에서 원재료의 가격이 결정되고, IT 기업들 간의 기술격차가 감소한다면, 결국 빅데이터를 이용한 완제품을 판매할 때 가격은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하될 소지가 충분하다. 여기서 데이터 시장이란 데이터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 마이데이터법이 활성화되어 개인에게 직접 정보를 이용할 때마다 지불해야하는 상황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이 발생시키는 데이터가 프라이버시권 또는 공공재로서의 조세논리를 개발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적은 양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개인이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기 곤란한 경우나 개인이 국가에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 국가가 공공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조세의 형태로 부과하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세의 보완과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의 성향에 맞는 광고를 공급한다. 만약 유튜브가 그동안 지불하지 않던 원시데이터 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면, 광고주에게 이 비용을 전가하여 더 많은 광고수수료를 받을 것이므로 산업 전반에 가격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

IV. 데이터세 제도화 방안

앞서 우리는 데이터세의 필요성과 적합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실제 세제로 도입할 때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개인정보 이용료를 데이터 가공회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와 데이터 제공자인 개인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기본소득과 데이터세의 도입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유사한 제도를 검토하고 실질적인 징수방법과 배분 방법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기존 유사·관련 제도와의 조화 방안

가. 알래스카 천연자원 기금

세계적으로 공유자산에 대한 배당으로서 기본소득을 지급한 첫 사례는 1982년 알래스카주에서 천연자원의 사용수익을 영구기금으로 만들고 그 기금을 주식, 채권, 부동산에 다양하게 투자한 후 발생하는 수익을 미국시민권이 있는 알래스카 거주자에게 직업 등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분배한 것이다. 5인 기준 한 가구당 분배액은 1,281달러에서 6,405달러로 다소 연도별로 차이가 발생(기금수익률의 차이 때문)하는데, 2008년에는 최대금액인 1인당 3,239달러, 5인 기준 한 가구당 16,345달러가 지급되기도 하였다. 지급된 금액의 사용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건이나 의무도 없다는 점⁸⁶⁾에서 최근 우리나라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3개월의 사용시한을 둔 것과 대조된다. 알래스카의 기본소득은 이후 이란이 원유를 기반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 정책에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86) Karl Widerquist and Allan Sheahan, *op. cit.*, pp.2~4.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알래스카가 원유생산량이 풍부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알래스카주는 미국 50개 주 중에서 원유생산량이 10위에 그치기 때문이다.⁸⁷⁾ 그렇지만 알래스카주의 사례는 기본소득의 재원확보와 그 운용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참고하여야 할 점이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가 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므로, 공공재(Public good) 또는 공유재산으로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데이터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여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나. 영국의 마이데이터 정책⁸⁸⁾

영국 정부는 2011년 자발적으로 26개의 기업과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정보 주체에게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정책(MIDATA Initiative)을 실행하였다. 마이데이터 정책에 따라 경제혁신과 성장을 장기적 목표로 하여 2013년 마이데이터 연구소를 설립하고, 공공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한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제정(2014년)하였다.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민관협력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였는데, 에너지 분야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에너지 관리를, 금융 분야는 금융자산 및 현금흐름을 관리하여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고, 복지 측면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생활을 증진하였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건강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환자의 건강상태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복약지도를 통해 만성질환자와 환자의 맞춤형 의료서비스 체계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민들의 주소지 이전과 관련하여 전기, 가스, 통신, 신용카드 회사 등에게 관련

87) Karl Widerquist and Allan Sheahan, *op. cit.*, p.5.

88) <https://www.gov.uk/government/news/the-midata-vision-of-consumer-empowerment>
(검색일 : 2020. 7. 27.).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주소변경을 위해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패턴을 분석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으로 가격 비교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 정책은 개인의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사회·경제적 가치를 검증하고 혁신적인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정보 주체인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주권의식을 갖게 하고, 데이터가 공유경제의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다.⁸⁹⁾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데이터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반으로 데이터 거래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국가가 공공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를 이끄는 측면에서 영국의 마이데이터 정책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거래소를 통해 어떤 분야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빅데이터 구축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시사하는 점이 크다.⁹⁰⁾ 하지만 영국의 마이데이터 정책은 데이터 공유를 통해 개인 및 민간회사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한 효과를 내는 데 그쳤을 뿐, 다시 반대급부로서 이에 대한 정보(raw data)를 제공한 주민에게 정보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조세정책으로 확대되지는 못했다.⁹¹⁾

다. 중국의 정부 주도 데이터거래소

중국은 빅데이터 개발 및 활용 강화를 통한 데이터 강국 매진 목표를 천명하고, 2014년 12월 세계 최초로 귀저우성 도시인 귀양에 글로벌 빅데이터

89) UK Midata Strategy Board, *Potential consumer demand for midata Findings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2012, pp.13~14, pp.16~17.

90) 우리 정부도 의료·금융·유통·에너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활용서비스를 위한 8개 과제를 선정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진료이력부터 생활습관까지 마이데이터로 편리하게 건강관리”, 2019. 5. 16.자 보도자료, 1면).

91) UK Midata Strategy Board, *Ibid.*, p.17, p.22.

거래소(GBDEX)를 설립하였다. 2015년에는 귀저우에 이어 2016년에는 징진지, 주장삼각주, 상하이, 허난, 충칭, 선양 및 내멍구 등 7개의 실험구를 선정하였다. 데이터거래소는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 가공, 변환, 가격 책정 등의 전과정을 처리하고 회원사 사이의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거나 외부로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개발과 활용을 통해 경제성장 모델을 전환할 모멘텀으로 삼아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부의 협치 능력도 향상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정책 및 산학연의 공동 노력으로 중국의 빅데이터 산업의 규모는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는데, 2013년 1,000개가 되지 않던 빅데이터 기업 수가 2017년에는 8,949개로 성장하였고 사업 규모는 4,700억 위안을 달성하였다.⁹²⁾ 2018년 기준 거래소는 알리바바, 텐센트, 하이얼, 마오타이, 화웨이 등 2천 개의 회원사를 유치하여 225개의 데이터 자원을 확보하고 4천여 개의 데이터 상품을 거래하고 있다. 회원은 회비에 따라 일반회원(무료), 실버회원(30만 위안), 골드회원(50만 위안)으로 나뉘며, 일반회원이 약 80%를 차지한다.⁹³⁾

중국의 데이터거래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데이터 가격의 책정이다. 실제로 거래소를 통해 세계시장으로 유통되고 있으므로 판매되는 빅데이터 이외에도 원시데이터의 가격산정과 관련한 글로벌 공정가치의 산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개인의 데이터를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데이터거래소를 통해 축적, 가공하여 판매가 활성화되고 그 노하우가 축적된다면, 원시데이터의 가치를 산정하여 국내외 IT 기업에 대한 데이터세(원시데이터 사용요금) 부과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도가 지역화폐 데이터를 수집하고 창출한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였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데이터거래소를 통해 데이터의 수집, 가공 및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원시데이터의 가치를 체계적으

92) KOSTEC(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중국의 빅데이터 지원 정책과 동향”, 『Issue Report』 Vol.3,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2018. 1. 10., 14면.

93) 배영임·신혜리, 앞의 보고서 재인용, 16면.

로 산정하여 데이터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신용카드로 지급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⁹⁴⁾ 이 제도는 1999년 8월 31일 신설된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하여 9차례에 걸쳐 연장되었으며, 현재는 2019년 말 개정으로 2022년 말까지 유지된다. 정부가 처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입한 것은 국민들의 신용카드사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영업자의 매출 누락을 방지하여 과표를 양성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였다. 실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의 매출 누락이 눈에 띄게 감소하게 되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특히, 근로자의 소득공제라는 직접적인 반대급부로서의 기능이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일정 소득이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혜택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수직적 공평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으므로 현대 사회에서 그 효용성 면에서 편익이 정부의 조세지출⁹⁵⁾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몰 시한 연장을 매년 연장하는 것보다는 소득세법에서 영구적으로 공제제도를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공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사용 비중은 2016년에 이미 전체 결제금액 중에서 50.6%를 차지하였고 미국 23%, 독일 1.3% 등에 비추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⁹⁶⁾ 2018년에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600조원을 돌파하였고

9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제2항.

95)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폐기할 경우 조세지출이 감소하여 연간 2조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96)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171911>(검색일 : 2020. 8. 6.).

1만원 이하 소액결제도 증가하고 있다.⁹⁷⁾ 최근에는 재난지원금도 카드로 지급되어 실제 사용된 용도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데이터는 처음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될 때 보다 개인의 소비성향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생성한 신용카드사용 데이터를 통해서 국가가 세수증대와 더불어 범죄방지 등의 목적까지 활용하는 사례를 볼 때 이미 데이터로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는 데이터세의 도입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동의를 얻어 원시데이터를 활용하는 IT 기업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가공 판매하여 그 대가를 징수하고, 매년 시효가 지나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⁹⁸⁾까지도 데이터세로 환수한 후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하는 방법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전 국민의 신용카드사용 데이터는 경기도가 지역 화폐를 사용한 도민 중에서 공익목적으로 사용을 동의한 사람들의 데이터양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미 경기도에서 데이터를 가공하여 판매한 것을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세의 전면적인 도입의 첫 단추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신용카드사용 정보는 정부 주도의 빅데이터 거래소 또는 공공플랫폼 운영을 확대할 때도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원시데이터 수수료를 스스로 책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주민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이를 공급하는 공공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다. 공공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그 재원의 목적에 맞게 배분하면서, 그 운영상 발생한 자료를 토대로 원시데이터의 가격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9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20303057>(검색일 : 2020. 8. 6.).

98) 신용카드 포인트를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에 남아 있는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매년 1300억원이 넘는 포인트가 소멸되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529081200002>(검색일 : 2020. 8. 6.).

2. 징수방법

가. 운영 형태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데이터세)를 징수하는 형태도 조세로 할 것인지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 징수 편의와 효율성 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조세라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서비스세나 디지털세와 같은 매출 또는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다. 디지털(서비스세)은 개인이 사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고 수익이 발생시키는 기업의 수익을 소비세 또는 소득세의 형태로 그 소비가 일어난 국가에서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세는 원시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을 대리하여 정부가 그 수수료를 받아 기본소득 형태로 나누어주겠다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기업의 재료비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매출이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다. 한편,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므로 데이터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면, 세율도 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 규모 등에 따라서 100%에서 0%까지 적용하게 한다면 규모가 큰 IT 기업들에게 데이터 구입가격을 모두(100%) 지불하게 할 수도 있고, 소규모 회사나 인공지능 등 특정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감면 또는 면세까지 적용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사용할 때 동의받은 사람 수, 또는 활용횟수를 주기별로 합산하여 빅데이터 용량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도 있다. 과세표준을 데이터 용량으로 하더라도 그 가치 산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측정 방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개개인이 제공한 원시데이터의 가격을 산출할 필요가 없고, 전체 사용량의 가격판단만 하면 되므로 간단한 구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가가 수많은 원시데이터에 대하여 사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소유권 또는 대리권)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청구권과 정부가 이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등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데이터 3법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은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재산권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제작자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해주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세는 국가가 대리권을 행사하여 원시데이터를 사용하는 IT 기업들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는 것과 같다. 기본소득의 재원을 확보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원시데이터 소유자를 대신하여 받아 주는 것이라면 조세가 아닌 부담금 형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이 IT 기업의 가공정보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내거나 광고를 의무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처럼, 빅데이터의 원천이 되는 원시데이터를 제공한 개인에게 이를 활용하는 빅데이터 회사들도 원재료의 구입대가를 지불하는 근거가 해당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보다는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투입된 직접비용(원재료의 대가)이기 때문에 조세이든, 부담금이든 그 목적 달성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IT 기업이 기업 활동을 위해 데이터를 사용(소비)하는 대가로 조세를 부과될 때 기업을 담세자로 하는 소비세가 될 수 있지만, 부담금이라면 조세가 아니므로 외국기업에 대한 국제조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국가 간 조세조약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재원의 규모가 장기적으로 200조 이상 예상⁹⁹⁾되고, 부담금의 형태로 부과된다면 이를 징수 및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야 하므로 징수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공과금보다는 국세로 징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허락할 때마다 정보 동의 대가를 그때마다 IT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나 포인트로 받거나 상품가격을 즉시 할인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정보사용자인 IT 기업이

99) <https://news.join.com/article/23802985>(검색일 : 2020. 11. 13.).

정보제공자인 개인에게 직접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징수와 배분에 따른 행정처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개인이 그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인이 합리적으로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가격산정이 어려우므로, IT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 가격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거래소를 활성화하거나 정부가 가격형성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도록 데이터 사용 대가를 세제 형태로 부과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인터넷 쇼핑물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개인정보 이용에 반드시 동의해야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앞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회사들을 예측하거나 그 사용 용도(범위)를 제한하기 어렵다. 또한 동의하지 않으면 상품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기업들은 개인이 동의한 개인정보를 물품의 구입이나 배송과 관련되지 않은 광고 등에 활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본래 상품 판매 목적 외에 다른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에 의하여 e메일 수신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연 1회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통지하고 있다. 개인에게 통지되는 내용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기관과 그 내용,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정보와 이전일시, 방법 등이다. 그런데 정보의 이용 사실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 요청회사까지 공유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할 때 이 정도까지 다양한 회사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지 알기 어렵다. 추후 자신의 정보를 왜 정보요청회사와 공유하였는지 설명도 없고,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개정된 데이터 3법이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강화하였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재사용 대가까지 청구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e메일로 사용 내역 통지만 할 것이 아니라 매년 재사용을 위한 연장허가를 받게 하고 다시 의무적으로 정보이용료를 소비자에게 지급하게

끔 해야 한다. 예상할 수 있는 순기능은 기업이 상품 판매가 끝난 후에는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음에도 자신의 수익사업을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정보제공자 자신의 정보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나. 과세주체

우리나라 헌법은 제59조에서 ‘조세의 모든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지방세의 과세권은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세의무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4조에 의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므로 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지방세 형태로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가능하다.¹⁰⁰⁾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세의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일반조례로도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일반조례는 지방세법령의 구체적 위임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¹⁰¹⁾ 조례로서 지자체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과세할 수 있는 데이터세를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현재 지방세의 세목을 살펴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100) 지방세의 개념을 공권력 관계에서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민으로부터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징수한다면 과세관청만 납세의무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신고납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조세채권 채무 관계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처분이 없이도 납세자인 주민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발생하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이미 성립된 납세자의 채무를 확인하는 데 그친다(전동훈, 『2020 지방세실무』, 한국세무사회, 2020, 3면).

101)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는 지방세법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어도 자치단체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면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행자부 세정-844, 2005. 5. 23.).

이 가운데 특히 기본소득의 재원을 목적으로 조세 제정을 위한 위임이 가능한 세목은 없다. 헌법상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형태여야 하고 모든 법률은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국회의 입법을 요구하는 것도 힘들다. 데이터세가 지방세로 도입되기 곤란한 이유이다.

만약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내에 주소를 둔 국내외 사업자(법인과 거주자)를 대상으로 데이터세를 부과한다면, 티부(Tibuout)가 말한 ‘발에 의한 투표(Voting by the feet)’¹⁰²⁾에 의해 기업들이 타지역으로 소재지를 옮길 수 있다. 수도권 내의 공장이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법률¹⁰³⁾이 시행된 이후 실제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이나 공장을 이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만약, 사업자에게 세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세부담에 따른 직접적인 반대급부도 없다면, 사업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 할 것이므로, 결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세수도 함께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도민의 기본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데이터세를 부과한다면, 경기도 내에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등의 국내 대형 IT 기업들이 데이터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세가 도입된다면 지방세보다는 국세 형태로 징수하는 것이 외부효과를 감소시키는데 더 유리하다. 기본소득의 배분을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더라도 먼저 국세로 징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102) 티부는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하여 지방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발에 의한 투표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각 개인이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에 자기 발로 걸어가서 정착하게 된다는 의미로 조세 부담이나 공공재의 규모 및 질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기업입장에서 조세 및 임차료 절감, 정부보조금 지원 등의 유인이 발생한다면 지방으로 공장이나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103)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80조 등.

다. 세목과 징수 시기

납세의무자가 되는 IT 기업이 법인이면 법인세가, 개인이면 소득세가 부과되는 현재 세법구조상 빅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IT 기업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즉, 데이터세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raw data)에 대한 가격을 받겠다는 것이므로, 만약 데이터세를 부과하면 그 만큼 법인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어 법인세 과세가액이 낮아지므로 한꺼번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낫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제가 수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고집하는 바람에 그 계산의 복잡성, 각국의 합의가 곤란하다는 문제 등으로 사실상 과세가 되지 않고 있으며 2021년까지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한 시점이라 여전히 과세가 쉽지 않다. 그러나 데이터세는 소득의 산출 전에도 데이터를 사용하는 시점에 과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디지털세제와 병존하면서 디지털세제의 보완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세의 정의에 반드시 기본소득의 재원마련을 위한 것임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또한 세계 경제가 디지털화된 시점에서 기존의 소득과세 체계에서 벗어나 탄소세, 로봇세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조세제도까지도 검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대변화에 맞은 세목과 과세표준의 패러다임을 새로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데이터세는 별도의 세목으로 신설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로 별도의 세목을 만들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빅데이터를 가공·판매하는 IT 업종에만 한정된다는 측면에서 별도로 신고 시기를 두고 납세까지 하게 하는 것은 납세협력비용 측면에서 불합리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현행법상 주기적으로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세목에 부가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두거나 그 시기와 같게 만드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신고기한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마다 담세자이며 납세의무자인 IT 기업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납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¹⁰⁴⁾ 다만, 업종에 따라 그 과

104) 개인과 2021년 이후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

표 산정이 달라지므로 다소 부가가치세법 체계가 복잡해질 우려는 있다. 반면, 소득세의 형태로 데이터세를 부가할 수 있다면, 기업은 회계 기간 결산이 완료된 후 법인세를 납부와 동시에 원시데이터의 사용요금(데이터세)을 정산하여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이 소유한 비업무용 토지 등 양도소득의 경우 이미 산출된 법인세액을 납부하면서 양도소득에 10%(미등기는 40%)에 해당하는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¹⁰⁵⁾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회사들에게 데이터세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부가해서 납부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다만, 데이터세의 납부시기를 법인세와 일치시키면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하는 시기가 회계연도가 종료되고 다음연도 법인세(소득세)신고 기한까지 늦춰지므로 징수와 배분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라. 과세용도(목적세)의 적합성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데이터세의 정의가 반드시 기본소득의 재원마련을 위한 것임을 한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도입 이후 목적세가 아닌 보통세로 사용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조세도입 시기에 명분상 기본소득의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으므로 보통세가 아닌 목적세 형태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현행 국세의 경우 목적세는 교육재정의 확충¹⁰⁶⁾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¹⁰⁷⁾ 교통시설 확충, 에너지, 환경보전과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¹⁰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각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두고

자는 반기마다 신고납부하고 예정신고기한에는 국가가 고지한 예정신고액을 납부한다. 하지만 일반법인인은 3개월마다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105) 법인세법 제55조의2.

106) 교육세법 제1조.

107) 농어촌특별법 제1조.

10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

있다. 지방세의 세목 중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로 한정¹⁰⁹⁾되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¹¹⁰⁾

목적세(Earmarked Tax)는 그 성격상 특정 경비에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재정충당에 사용될 것으로 징수하는 보통세와는 다르다. 목적세는 수익자부담 원칙 이론과 특히 지방재정의 세입 및 세출 연계성의 충실 정도, 지방재정 배분의 효율성을 충족시켜야만 부담자 역시 편익을 얻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그 집행구조의 복잡성, 높은 납세협력비용, 국회의 예산통제권 약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과 더불어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설정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¹¹¹⁾이 있다. 만약 데이터세가 목적세의 형태로 도입될 경우 이론적으로 목적세가 수익자부담 원칙의 충실, 즉 공공재로부터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논리와 상응해야 한다. 수익자부담 원칙은 주로 도로, 항만 등 공공재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비용)을 조세로 조달하면서 공통적인 편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데, 데이터세는 납세자와 편익을 받는 대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즉, 데이터세의 담세자(납세의무자)는 IT 기업이며 그 공공재(원시데이터)를 사용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효과를 보므로 응익과세원칙이 실현된다. 또한 데이터세 부과로 확보된 재원이 개인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되므로 이익을 받는 계층이 추가된다. 데이터를 이용하는 IT 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 성격의 데이터세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필요경비 측면에서도

109) 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3항.

110) 지방세법 제141조.

111) 우지훈·양인준, “세법체계 관점에서 목적세의 허용범위 및 정비방안에 관한 소고”, 『조세와 법』 제10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105~106면.

수익자부담 원칙과 상응한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바탕으로 할 때 상대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 세금을 부담하는 빅데이터 기반 IT 기업이 받는 편익과는 직접적으로 상관관계(응익과세)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데이터세는 목적세로서도 적합하다. 데이터세가 목적세일 경우 독자적인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¹¹²⁾도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측정의 문제를 해결하면 도입에는 큰 문제가 없다.

3. 배분방법

가. 기여도 또는 소득 기준 배분

데이터세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배분 기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논리적인 측면에서 데이터세는 원시데이터 창출에 기여도가 큰 사람이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개인의 생년월일이나 휴대전화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배제한 비식별정보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여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¹¹³⁾

또한 행정비용의 절감 목적과 신속한 배분을 위해서는 기여도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득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본소득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하여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배분할 경우 소요시간이 길어져 자금지원이 시급한 계층의 부담이 컸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를 2006년 말 신설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국가가 소득이 적은 개인을 대상으로 징수한 세금에서 일부를 매년 소득의 정도에

112) 우지훈·양인준, 앞의 논문, 130면.

113)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12281949001(검색일 : 2020. 7. 27.).

따라 차등 배분하고 있다.¹¹⁴⁾ 이미 소득의 정도에 따라 정부가 세수에서 지출하는 소득이 있으므로 데이터세의 배분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다른 소득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소득을 배분하는 기본소득의 정의에도 부합한다. 기본소득의 재원이 성격상 국가에 의해 소유되고 관리되는 공공재(public goods)가 아니라 일종의 공유부(common wealth)일 경우 저소득층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견해¹¹⁵⁾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다만, 공공재(public goods)가 아닌 공유부(common wealth)일 경우 국가가 세금의 형태로 징수하는 것은 국민에게 대리권을 부여받았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논란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 지방소비세의 형태로 데이터세를 두는 방법

비록 목적세가 아니더라도 데이터세의 도입 취지가 정보제공자에게 그 합당한 가치를 기본소득의 형태로 배분하자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맞게 데이터세라는 명칭을 가진 세목은 그 필요성을 가진다. 다만, 데이터세라는 명칭을 반드시 국세에서만 사용을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앞서 지방세로서 과세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재원의 마련을 위한 세제는 지방세보다는 국세가 효율적이지만, 기본소득의 배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더 수월할 수도 있다. 데이터세의 재원이 만약 국세로서 만들어지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할 때 징수된 국세의 일정 비율을 데이터세라는 명칭으로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1%에 해당하는 조세를 이를 징수하는 관할 세무서장 및 세관장(특별징수의무자)이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장, 도지사 등에게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¹¹⁶⁾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

11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115) 금민, 앞의 글, 21면.

116) 지방세법 제68조, 제69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와 같이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형태로 부가된 데이터세는 분배까지 지방소비세처럼 지자체에 일정 비율로 할당하도록 입법할 수 있다. 데이터세가 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세의 세목으로 도입되어 국세를 분배할 경우 모든 지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국내외사업자에게 데이터세 부담의 차별이 없으므로 발에 의한 투표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다. 수직적 평등 문제

최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과 고용보험 중 어느 것이 더 정의로운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모든 국민의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들에게 똑같이 적은 소득을 지급하는 것보다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며, 기본소득은 고소득의 대기업 직원들에게는 푼돈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¹¹⁷⁾ 그러나 대기업 직원이 되기 위해 노력한 개인의 열정에 대한 대가라는 반론은 제하더라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일하지 않는 자를 더 우대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동일한 소득에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수평적 평등이라면 많은 소득이 있는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는 수직적 평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데이터세로 징수된 세수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면 추후 종합소득에 기본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이 수직적 공평 측면에서도 타당할 것이다. 연금제도가 잘 발달된 캐나다도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주민들에게 노후연금(OAS : Old Age Security pension)을 지급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배분하지 않고 단지 거주기간만으로 일률적으로 분배한 후 한해의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사람에게는 소득세 형태로 매달 다시 환원하게 하고 있다.¹¹⁸⁾ 우리나라는 매년 5월(성실사업

117) 24조원을 국민에게 국민소득으로 분배할 경우 연간 100만원씩 돌아가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 200만명에게 연간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https://oikyo1225.tistory.com/311>(검색일 : 2020. 8. 1.).

자는 6월)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대상 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개인을 대상으로는 기본소득을 포함한 연간 총소득을 누진세율로 과세한다면, 수직적 공평에 대한 문제는 현행 법률시스템 내에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기본소득의 성격은 현행법상 기타소득 규정하되, 필요경비가 전혀 인정되지 않고 모든 수령액이 합산하도록 입법하는 것이 수직적 공평의 실현에 효과적이다.

V. 결 론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전 국민에 대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유사한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 국가에서도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증거들도 제시되고 있다. 다만,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에 있어서 정부의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또는 세수증대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대 IT 기업들이 그동안 무료로 사용한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대가를 국가가 대신 징수하여 분배한다는 개념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더불어 경제활동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가진다. 또한 데이터세가 목적세로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국민 개개인이 만든 원시 데

118) 2019년 기준 연간소득이 캐나다 달러 \$77,580 이상(최고 \$123,386까지)이면 2020년에 15%의 회수세(recovery tax)로써 매달 OAS 수령액의 일부 또는 전액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publicpensions/cpp/old-age-security/recovery-tax.html>(검색일 : 2020. 8. 1.).

이터의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라는 점에서 그 세원의 적합성도 가지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다국적 IT 기업이 그 원재료(raw data)의 사용 대가를 시장 논리에 의해 개인에게 직접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데이터세)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원시데이터의 가치를 산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원시데이터를 재료로 사용하는 회사는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빠른 시간(Velocity) 내에 다양한(Variety) 데이터를 가공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수익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경비를 산출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개인에게는 이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보다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보장 및 복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대신 이러한 역할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¹¹⁹⁾ 또한 데이터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디지털세제의 보완세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데이터세의 도입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과세체계와 징수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세를 도입하는 데 선결 조건으로 과세표준이 되는 데이터 가치(가격)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세의 전면 도입에 앞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데이터거래소를 활성화하여 영국과 같이 민관협력 데이터 플랫폼을 정부가 구축하고, 에너지, 금융, 복지, 헬스케어, 유통 등의 분야에 대한 데이터 산업의 수요 확대와 더불어 적정한 원시데이터의 가격 산출근거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국내외 IT 기업들이 데이터거래소에서 구매하지 않는 개인의 원시데이터도 과세할 수 있는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제조세 문제와 관련하여 국외 IT 기업이 국내에서 발생한 데이터 사용에 대한 데이터세 추징은 데이터 주권과 연계하여 그 과세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데이터 3법을 보완하고, 정부가 개인을 대리하여 이를

119) 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 제34조 제2항.

징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세는 그 징수의 편의와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보다는 국세의 형태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그 분배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소비세 또는 지방교부금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에게 금액을 균등히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조세가 가진 수직적·수평적 공평의 효과도 검토해야 한다. 우선, 데이터세의 분배는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개인의 소득 정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수평적 공평에 맞고,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을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수적으로 합산시키는 방법을 통해 수직적 공평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와 더불어 정보이용 동의할 때마다 포인트나 현금 지급과 같은 직접적 반대급부를 법제화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參 考 文 獻

1. 국내 문헌

- 전동훈, 『2020 지방세실무』, 한국세무사회, 2020.
- 강남훈, “4차 산업혁명과 공유부 배당 — 새플리 가치의 관점에서 —”,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2018.
- 고창열 · 정 훈 · 여영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다국적 인터넷기업 과세 방안”, 『전문경영인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전문경영인학회, 2019.
- 금 민, “공유자산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 『Future Horizon』 Vol.3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 김신언, “최근 디지털세제의 동향과 우리나라 과세제도의 개편방안”, 『조세법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20.
- 김은경, “디지털세의 현황 및 쟁점”, 『이슈&진단』 제387호, 경기연구원, 2019.
- 김현경, “구글(Google)의 뉴스저작물 정책에 대한 고찰”, 『강원법학』 제49권,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2016.
- _____, “국내 · 외 플랫폼 사업자 공평규제를 위한 제언”, 『성균관법학』 제29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 박민주 · 최신영 · 이대희, “유럽연합 DSM 저작권지침상 간행물 발행자의 보호”, 『경영법학』 제29권 제4호, 한국경영법학회, 2019.
- 배영임 · 신혜리, “데이터3법, 데이터경제의 시작”, 『이슈&진단』 No.405, 경기연구원, 2020.
- 우지훈 · 양인준, “세법체계 관점에서 목적세의 허용범위 및 정비방안에 관한 소고”, 『조세와 법』 제10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우창완 · 김규리, “EU 정책분석 보고서”,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국경』,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 윤수영,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소비자 데이터 주권에 대한 고찰 — EU GDPR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제29권 제5호, 한국소비자학회, 2018.
- 윤장렬, “기사 제공을 둘러싼 구글과 언론사의 공방전 — 유럽 저작권법 개정 배경과 논의”, 『언론중재』 통권 제141호, 언론중재위원회, 2016.

이양복, “데이터 3법의 분석과 향후과제”, 『비교사법』 제27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20 이슈 리포트”, 『데이터 3법 개정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Vol.2, 2020. 4.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 2020. 3.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제27권 22호, 2018. 11.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중국의 빅데이터 지원 정책과 동향”, 『Issue Report』 Vol.3,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2018.

홍승희, “인터넷링크행위와 저작권 침해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 『형사판례연구』 제24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6.

기획재정부, “디지털세 국제 논의 최근 동향”, 2019. 10. 30.자 보도참고자료.

기획재정부, “OECD/G20 IF, 디지털세 논의 경과보고서 공개”, 2020. 10. 12.자 보도참고자료.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원 — KDX 한국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유통 및 활용 혁신을 위한 MOU 체결”, 2020. 7. 22.자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안전한 데이터 유통’ 금융분야가 선도하겠습니다.”, 2020. 1. 21.자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 2020. 5. 11.자 보도자료.

2. 국외 문헌

EU, *Directive 2019/790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2019.

EU, *Regulation 2016/67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impact assessment*, 2018.

OECD, *Statement by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on the Two-Pillar Approach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29—30 January, 2020.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Tax Chanllenges Arisingfrom Digitalisatin-Interim Report*, 2018.

Karl Widerquist and Allan Sheahen, *The Basic Income Guarantee in the United States : Past Experience, Current Proposals*, Georgetown University, 2012.

UK Midata Strategy Board, *Potential consumer demand for midata Findings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2012.

US Trade Representative, *Section 301 Investigation Report on France's Digital Services Tax*, December 2, 2019.

<Abstract>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Data Tax as the Source of Revenue for Implementing Basic Income

Kim, Shin Eon*

The World economy is becoming digitalized as modern society has undergone the so-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istorically, as the economy develops, better job opportunities are brought out as well. However, the fear of this industrial revolution is that the modern economy will replace large portions of human employment due to automation and mechanization. The spread of COVID recently made people avoid contact or work online and thus it increased unemployment and worsened the economy. Meanwhile,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d emergency disaster cash supply to all people for overcoming the COVID related economic crisis, as a result basic income is rising as a conversation topic again. The nation has obligations to improve people’s social security, social welfare, economic growth, and the distribution of proper income at the same time. Therefore, subsidizing basic income is naturally able as a necessary measure for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and economic lives. Merely, how can the government secure the source of revenue for basic income is the most fundamental issue deciding the success of basic income now. A nation usually procures necessary resources of revenue through general taxation and the government fund. The use of the government fund has merit to secure funding quickly but it increases the nation’s debt and thus, it should only be used at levels that allow the government to maintain the appropriate level of debt. On other hand, taxation imposes burden to citizens directly, and thus it should be used cautiously. This is exactly the dilemma of securing financing for basic income. If we are able to gain a toehold to secure revenue for basic income without increasing the nation’s debt or shifting burden to people, it would resolve this situation.

Big Information Technology (IT) companies such as Google, Facebook in global and Kakao, Naver in domestic commerce have grown up under the

* Certified Tax Attorney, Ph. D. in Korea. Attorney at law in Illinois, U.S.

digit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Gigantic IT companies such as Google and Apple mainly use tax havens to avoid tax and thus many governments have been devoting all their energies to block them by introduction of digital tax system, a so called ‘Google tax’. IT conglomerates utilize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their products using raw data from personal information and making profit for themselves. They have been using personal raw data at no charge and thus a measure to impose tax for cost using raw data has been proposed recently to make this data a source of funding for basic income. This ‘Data tax’ would allegedly be similar to taxes on raw material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it is different from other digital tax systems discussed in the world recently to impose on Global IT conglomerates.

Consequently, hereinafter I checked the possibility and validity of a data tax as a solution for basic income through review legal problems. I proposed devices of data taxation by analyzing the concept of data taxes based on similar systems and methods in other countries to collect tax and distribute it as well.

► **Key Words** : data tax, basic income, raw data, digital tax system,
data exchange